

1. ②

【해설】 ㉠과 ㉡의 내용이 서로 대체되어야 옳은 지문이다.

♣ 해양경찰헌장(2021.01.01. 시행)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2. ②

【해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2021.2.25.일 시행되는 내용에서는 기존 수사정보국은 없어지고, 수사국과 국제정보국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다.

3. ②

【해설】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은 ㉠㉡㉢㉣㉤ 5개이다.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은 ㉥㉦㉧ 3개이다.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중레저법)
- ㉡ 해양환경관리법
- ㉢ 어선안전조업법

4. ③

【해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① 옳음. 【법적근거】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옳음. 【법적근거】 20조 2항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틀림. 국가를 상대로 직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적근거】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옳음. 【법적근거】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5. ④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옳음. **【법적근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옳음. **【법적근거】**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틀림. **【법적근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민간연안순찰요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6. ③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 제37조(연안구조정)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옳음. **【법적근거】** 제37조②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틀림. 1시간마다 파출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위치와 해상상황이다.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과 검문검색 등 중요순찰결과를 입항 즉시 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근거】** 옳음 제37조⑤ 연안구조정 근무자는 출·입항 및 해상순찰 근무 시에는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입항 즉시 파출소장에게 보고 및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④ 옳음. **【법적근거】** 제39조(연안구조정 등의 장비관리) ①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등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7. ①

【해설】 ① 틀림. **【법적근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② 옳음. **【법적근거】**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옳음. **【법적근거】**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옳음. **【법적근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④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② 옳음. **【법적근거】** 12조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옳음. **【법적근거】** 제13조(추적·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④ 틀림.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의 추적나포권은 해양경비법이 아니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조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근거】** 제13조(추적·나포)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9. ④

【해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옳음. ①항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옳음. ②항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옳음. ③항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④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옳음. **【법적근거】**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③ 옳음. **【법적근거】**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

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틀림. 해양자율방제대는 해양경찰청장의 법적 고유권한이기에 별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법적근거】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1. ①

【해설】 ① 틀림.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법적근거】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옳음. 【법적근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옳음. 【법적근거】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옳음. 【법적근거】 제8조(재의요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③

【해설】 외국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강제퇴거(옳음.) 【법적근거】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고발(옳음.) 【법적근거】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보호(옳음.) 【법적근거】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입국금지(옳음.) 【법적근거】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금지(틀림.)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출국금지 대상은 아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명령(옳음.) 【법적근거】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 출국정지(옳음.) 【법적근거】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통고처분(옳음.) 【법적근거】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3. ①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② 틀림. 5조②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③ 틀림. 5조②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④ 틀림.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령규정은 없다. 또한 5조②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위반하는 지문이다.

14. ③

【해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합대사령관이다. **【법적근거】** 통합방위법 제2조 4호 :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15. ③

【해설】 ① 틀림. **【법적근거】** 제36조(순찰차 등) ③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 틀림. **【법적근거】** 제36조(순찰차 등) ③ 순찰차 운전요원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옳음. **【법적근거】** ③ 순찰차 운전요원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이륜차량 운전요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틀림. **【법적근거】** 제36조(순찰차 등) ④ 순찰차 등은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출입, 출장소 감독순시 등 파출소 및 출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16. ③

【해설】 ㉠㉡㉢을 합산하면 810이 된다. **【법적근거】**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출 규모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고 초기에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사고 상황을 평가하여 광역 또는 중앙방제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

가. ㉠지속성 기름이 5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3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kl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kl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17. ④

【해설】 ㉠부양성 ㉡임시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법적근거】** 제36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제3호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8. ②

【해설】 을호비상 : 연가중지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6조 (근무요령) ⑥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19. ①

【해설】 ① 혈액침하현상은 시체 초기현상이다.

시체 초기현상	시체 후기현상
<p>임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죽음은 심장의 운동과 호흡 운동의 영구적 정지로써 결정된다. 그러나 심장운동과 호흡운동이 동시에 정지되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한쪽이 먼저 정지된다. 심장운동이 먼저 정지하는 것을 심장사(心臟死), 폐의 호흡운동이 먼저 정지하는 것을 폐사라고 한다. 심장사는 심장손상의 경우 또는 병사의 경우에 있어 심장이 쇠약하여 심장운동이 정지될 때에, 폐사는 질식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p> <p>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생리적 작용이 없어지고 주로 물리적 작용이 이에 대체되어 시체의 냉각, 건조, 시반(屍斑) 및 시체경직 등의 여러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가사(假死)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런 현상, 특히 시반 및 시체 경직이 나타나면 죽음의 확실한 징후가 되는 것이다.</p> <p>1) 시체냉각(Cooling of the body, Algor mortis) 2) 시체건조(Drying of the body) 3) 혈액침추 및 시반(Hypostasis and Postmortem Lividity, Livor mortis) : 사후 혈액순환이 정지되면 혈액은 자체중량에 의해 점차 시체 밑바닥 부위 혈관에 모인다. 이런 현상을 혈액침추라 한다. 혈액침추는 시체의 체표 및 내부장기의 밑 부위에도 생기며, 피부에 나타나는 혈액침추 현상을 특히 시반(屍斑)이라고 한다. 시반은 최초에는 작은 점상의 어두운 붉은색의 반점을 형성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 융합 증대하여 넓은 암적색의 반문(斑紋)으로 변한다. 4) 시체경직 및 사강(Postmortem rigidity· Rigor mortis)</p>	<p>초기의 시체변화는 대개가 물리학적 변화이지만, 후기의 시체변화는 결국 내외 각종의 원인에 의한 분해의 과정이다. 시체의 분해는 극히 복잡한 현상으로서 상세한 것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주로 화학적 변화에 의하는 것이다. 이 화학적 변화는 주로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의 화학적 분해작용으로서 고급 유기성 조직이 간단한 화합물로 변화하고, 드디어는 질산, 탄산, 황산, 인산 등의 산소화합물 또는 암모니아, 탄수화물, 황화수소 등의 수소화합물로 변화하여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땅속에 침윤되어 간다.</p> <p>1) 부패(Putrefaction) 시체의 부패는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postmortem decomposition)를 말한다. 2) 미이라화(Mummification) 시체의 건조가 부패, 분해 등의 현상보다도 빠르고 또 고도로 진행하면 시체의 건조물이 된다. 이것을 "미이라"라고 한다. 건조지대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며 아프리카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3) 시랍화(Adipocere formation, Saponification) 시체 성분이 화학적 분해,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를 시랍화라고 한다. 시랍 생성에는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은 물속 또는 수분이 많은 땅속에 있던 시체에서 생긴다. 시랍색은 회백색(灰白色)이고 비누같은 경도가 있고 질이 무르기 때문에 파손되기 쉽다. 소아는 대략 2~3주일간, 성인은 4~5주일간에 형성된다. 4) 백골화(Skeletonization of the body)</p>

20. ④

【해설】 범죄첩보의 특징

- ①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 ②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 ③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 ④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 ⑤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